

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명단

구 분	성 명	연 령	현 직	주요 학·경력	비 고
대표 위원	김명수	41	시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국 호놀룰루대 사학과 덕우라이온스클럽 354-A지구 이사 	
위원	송미화	39	시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덕성여대 국문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집행위원장 	
"	한춘자	56	시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려대 경영대학원 전국지방의회 여성의원 동우회장 	
"	김홍모	62	공인회계사 (김홍모회계사무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국대 경상대학 (주)한빛은행 세무상담 위원 	
"	김홍렬	37	공인회계사 (선진회계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사범대 안건회계법인 	
"	최대식	42	공인회계사 (케이엔씨회계사무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국대 대학원 회계학과 청운회계법인 	
"	신용완	37	공인회계사 (세종회계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남대 대학원 산동회계법인 	
"	백진환	50	공인회계사 (대주회계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광대 경영학과 청원회계법인 근무 	
"	김영철	60	공인회계사 (안건회계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균관대 대학원 상학과 한국체육과학 연구원 감사 	
"	박문식	40	공인회계사 (재원회계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경제학과 재원회계법인 감사 	

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
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
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2항중 “65세 미만이고”를 “63세 미만
이고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
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(이하 “시
민”이라 한다)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
을 강화하고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
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
시 시민감사관(이하 “시민감사관”이라 한다)
을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, 지방자
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 및 동법
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0조의17
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
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